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3 - 138호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 (시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종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다. 규　　모 : 연장 14.28km, 폭원 17.5m(왕복 4차로)

라. 사업시행자 및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방법·내용

가. 공개기간 : 2023.05.22. ~ 2023.06.09.(14일간)

나. 공개방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첨부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결정내용 : 결정사항 공개 첨부물(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식.

태안 근흥 정죽-두야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3. 05.

국 토 교 통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노선은 국지도 96호선 중 태안 근흥 정죽~두야 구간은 국방과학연구소로 이동하는 대형 군사용 차량, 화물차량과 안흥항, 신진항, 해수욕장 등 인접 관광지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등의 통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위험하므로 (시점)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서 (종점)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일원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성 및 주행 쾌적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의거 개발기본계획 중 도로의 건설에 해당되어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 기본 계획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총 사업연장 : 14.28km(신설 1.40㎞, 확장 12.88㎞) ○1.40㎞/4.0㎞ + 12.88㎞/10.0㎞ ≒ 1.6 > 1.0(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1.2.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의거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사업노선	○총 사업연장 : 14.28km(신설 1.40km, 확장 12.88km) ○1.40km/4.0km + 12.88km/10.0km ≒ 1.6 > 1.0(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 본 계획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실시하고, 제24조 제6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하고자 함

<표 1-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표 1-3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중 략 -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4.1 추진경위

- 2021. 08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 2021. 09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15) 고시(태안 근흥 정죽~두야)
- 2022. 04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설계용역 착수
- 2022. 08~09 : 설계기준 및 비교노선 검토
- 2022. 11 : 관계기관 협의(충청남도, 태안군 등 총 17개기관)
- 2022. 12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3. 04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

1.4.2 향후계획

- 2023.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예정)
- 2023. 07 : 주민의견 수렴(설명회, 공람)(예정)
- 2023. 09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요청(예정)
- 2024. 04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예정)
- 2025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착공

1.5 계획의 내용

가. 사 업 명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 시 점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종 점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다. 총연장 및 폭원 : 14.28km, 17.5m(왕복 4차로)

라. 설계속도 : 70km/hr

마. 계획수립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바. 승인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아. 주요 사업내용

○ 도로 구분

구 분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비 고
계획노선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	국가지원지방도	96호선

○ 주요 시설물 : 교량(6개소, L=145m)

구 분	명 칭	연 장(m)	형 식	비 고
교 량	정죽1교	35	합성라멘교	소하천(죽림천)
	정죽2교	15	합성라멘교	소하천(죽림천)
	정죽3교	35	합성라멘교	소하천(납탈골천)
	용신교	30	합성라멘교	지방하천(용요천)
	가작골6교	15	라멘교	소하천(가작골천)
	추동11교	15	라멘교	소하천(추동천)

○ 표준횡단면도

구 분	중분대	차로폭	길어깨	총폭원	비 고
	1.5m	4@3.25m= 13.0m	2@1.5m= 3.0m	17.5m	-
일반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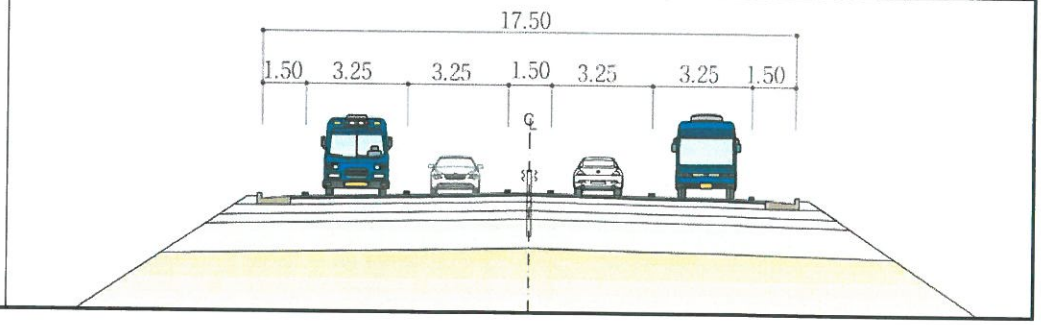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행정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위원구성 : 총 9명(위원장 포함)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	김 ○ ○	계획수립기관
2	위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류 ○ ○	계획수립기관
3	위 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 ○	협의기관
4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주 ○ ○	민간전문가
5	위 원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윤 ○ ○	민간전문가
6	위 원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오 ○ ○	민간전문가
7	위 원	태안군 환경산림과	박 ○ ○	지자체
8	위 원	근흥면 이장단협의회	김 ○ ○	주민대표
9	위 원	태안군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 ○ ○	시민단체

- 심의기간 : 2023년 04월 03일 ~ 2023년 04월 26일
- 결정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등
- 결정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총 8인 심의의견(서면) 제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심의 개최 계획 알림(정죽-두야)

1. 도로계획과-2152(2023.3.7.)호의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2023.4.26.(수) 14:00 서면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자료배부 및 안건설명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심의수당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귀 부서에서 심의 후 위원별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1부.
2.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1부.
3. 심의위원 추천 공문 각 1부.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인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1410 (2023. 4. 3.) 접수 도로계획과-3409 (2023. 4. 3.)

우 34546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 / http://www.molit.go.kr/drocm

"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요청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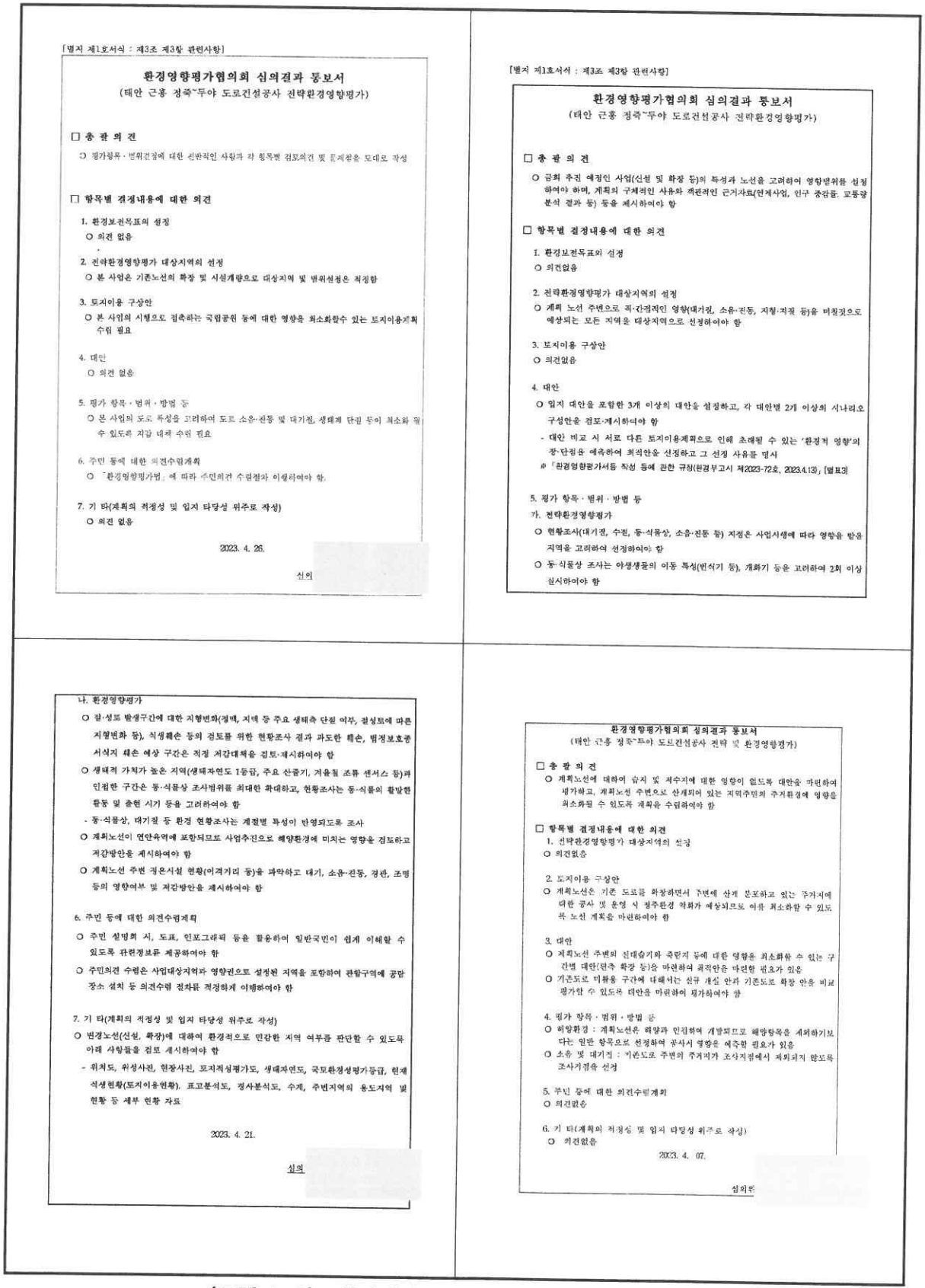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도래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은 기존노선의 확장 및 시설개량으로 대상지역 및 범위설정은 적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접속하는 국립공원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사업의 도로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소음·진동 및 대기질, 생태계 단절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 대책 수립 필요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4. 25.

심의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금회 추진 예정인 사업(신설 및 확장 등)의 특성과 노선을 고려하여 영향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획의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현재사업, 인구 증감률, 교통량 분석 결과 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노선 주변으로 직·간접적인 영향(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대안 비교 시 서로 다른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의 장·단점을 예측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 선정 사유를 명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4.13), [별표3]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현황조사(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지점은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동·식물상 조사는 야생생물의 이동 특성(번식기 등),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
○ 칼·성토 발생구간에 대한 지형변화(경매, 지맥 등 주요 생태축 단절 여부,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 식생훼손 등의 정도를 위한 현황조사 결과 과도한 훼손, 범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예상 구간은 적정 저감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주요 산줄기, 거울철 조류 센서스 등)과 인접한 구간은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현황조사는 동·식물의 활발한 활동 및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동·식물상, 대기질 등 환경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
○ 계획노선이 연안육역에 포함되므로 사업추진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파악하고 대기, 소음·진동, 경관, 조명 등의 영향여부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설명회 시, 도표,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대상지역과 영향권으로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관할구역에 공람장소 설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변경노선(신설, 확장)에 대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적성평가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등급, 현재 식생현황(토지이용현황),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수계,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및 현황 등 세부 현황 자료

2023. 4. 21.

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계획노선에 대하여 습지 및 저수지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제가하고, 계획노선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노선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변에 산개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공사 및 운영 시 철주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노선 주변의 천대습지와 축령지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별 대안(단축 확장 등)을 마련하여 최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도로 미확용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 개설 안과 기존도로 확장 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해양환경 : 계획노선은 해양과 인접하여 개발되므로 해양항목을 제외하기보다는 일반 항목으로 선정하여 공사시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 소음 및 대기질 : 기존도로 주변의 주거지가 조사지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사지점을 선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4. 07.

심의

(그림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1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목표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수가 타당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대상지역 및 범위가 타당하게 설정됨

3. 토지이용 구상안

○ 타당하게 제시됨

4. 대안

○ 제시된 5개 대안 및 입지에 대한 검토가 적합하며, 제시된 각 선정안에 타당한 검토결과를 보이고 있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며, 특히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면밀히 검토 평가한 결과가 있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의 1~4호 요건에 모두 해당한 경우, 의견수렴절차 생략가능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의견 없음

2023. 4.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계획은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으로서, 노선 선정시 군관리계획, 도로건설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노선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입지의 특성,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p20에서 사회경제환경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주거는 p86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대상지역 설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토지이용 구상안

○ 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 선정 필요

4. 대안

○ 선정된 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지형·지질

- 일부구간(연포주유소 인근 등)에서 계획노선이 급사면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붕괴 및 단절로 인한 영향이 예상 될 경우 저감대책 수립 필요

○ 수질

- 하천통과구간의 교량건설시 하천내 교각 건설을 지양하고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 하천수질, 수생태계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 수립 필요

○ 대기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석면 노출 및 비산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

○ 소음·진동

- 운영시 군사용 차량, 화물차량, 관광버스 등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평가대상지역내 정온시설을 면밀히 조사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필요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므로 금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7. 기 타

○ 의견 없음

2023. 4. 26.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사업추진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적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4. 대안

○ 적정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정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시 지역주민 의견수렴토록 시행이 필요하고 주민 의견 제시된 부분 우선 적용 필요.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적정함.

2023. 4.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적정하다고 봅니다.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대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주변지역 여건, 지역 주민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 설정이 필요합니다.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의견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시 소음, 먼지 등으로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방안을 제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보다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illegible]

2023. 4. 26.

(그림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2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도로건설공사 구간은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로서 현 왕복2차선으로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이므로 본 도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됨. 향후 충분한 역할을 감당 할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기대함.
또한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이므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 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6개소의 내륙 습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문처으로 평가 준비서에 제시된 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계획 노선 인근에 많은 어업권이 산재하여 피해 및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예방을 수반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조사 자료 인용 시 현재의 환경 및 생태현황을 반영한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에 걸쳐 추후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어업권 및 인근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별도 의견 없음.

2023. 4. 25.

심의

(그림 2-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3

제3장 대상지역 설정

3.1 대상지역 설정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에 따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해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 대상지역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2-240호), 2022. 12.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등을 참고함

3.1.1 입지의 범위

○ 계 획 명 :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 계획구간

- 시점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종점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 도로제원 : 연장 14.28km, 폭원 17.5m(왕복 4차로), 설계속도 70km/hr

3.1.2 주요항목별 평가대상 범위

○ 주요 평가대상은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 · 식물상, 지형 · 지질, 경관, 수환경, 대기질, 소음 · 진동, 토양환경 등 변화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산지 등 편입에 따른 수목훼손,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장비가동 등에 의한 비산먼지·소음 발생, 운영시 도로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발생, 도로 노면 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발생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항목별로 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 지역을 설정함

3.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도로건설 계획에 따른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자연적 여건과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3.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 상 지 역	평가 대상 지역 설정 기준
계획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절 · 성토에 따른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절 · 성토공사 및 구조물(교량 등) 입지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오수 및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및 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으로 토양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계획시행으로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태안군 및 계획노선	○발생폐기물, 오 · 폐수의 적정처리 가능 여부 및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현황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도로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예상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 예상지역

3.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3.3-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분 / 항목		평가대상범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기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공사시 및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자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대기환경	기상	○ 사업노선과 인접한 기상대	2012년~2021년	○ 서산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대기질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토량 운반차량 및 작업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이용차량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
	온실가스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자재 투입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차량 운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	수질 및 수리수문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절·성토 공사로 강우시 토사 유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해양환경	○ 사업노선 및 주변해역	공사시	○ 공사시 토사유입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해역

<표 3.3-1 계속>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분 / 항목		평가대상범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기준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환경	토지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사업시행에 따라 토지의 편입 및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토양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지형·지질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건설폐기물, 폐유 등의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 진동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및 운영시	○ 공사시 장비가동, 발파 및 항타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예상지역 ○ 운영시 사업노선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정온시설
	경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교량 등의 구조물 설치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 가옥 등 철거, 공사인부 유입 등으로 인구 및 주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3-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도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 "대안" 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함

○ 본 계획시행에 따른 대안 및 검토항목 등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22-240호(2023.1.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메뉴얼, 2017.12, 환경부」 등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설정하였음

<표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 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설정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설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설정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설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4.1-2>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구 분	선정기준	내 용	
계획비교	계획수립 여부	1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
		2안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Action)
입지	대안별 노선 선정	1안	○기존도로를 활용한 평면계획 - 기존도로 확장 12.8㎞, 신설 1.4㎞
		2안	○정지시거를 확보한 평면계획 - 기존도로 확장 7.1㎞, 신설 7.1㎞

4.2 대안별 비교·검토

4.2.1 계획비교

○ 본 계획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에 대한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1안	2안
대안종류	계획 미수립시 (No Action)	계획 수립시 (Action)
내 용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 및 생활여건 변화
장 점	○계획수립 및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환경영향이 없어 자연환경적 측면으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감소 ○상위 관련 계획 실행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지역균형 발전
단 점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발생 ○관광객, 주민이용 등의 불편 초래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인 영향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선정(안)	-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일부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토록하여 이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것임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체증 해소, 교통 안정성 및 주행 쾌적성 향상으로 도시지역 생활여건 및 접근성 개성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2.2 입지

○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경제성, 시공성, 지장물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관련계획 여부를 판단하여 후보노선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들 후보노선에 대하여 기술적, 교통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였음

<표 4.2-2> 입지에 따른 대안 비교 검토결과

구분		대안1	대안2
개 요		○ 기존도로를 활용 평면계획	○ 정지시거를 확보한 평면계획
		○ 근흥면소재지(기존도로 존치) →신설(4차로)	○ 근흥면소재지 → 기존(2차로)+신설(2차로)
		○ 정지시거를 고려한 확폭 (3개소/8.9km)	○ 정지시거를 고려한 확폭 (1개소/3.9km)
연 장	총연장	L=14.28km	L=14.28km
	확 장	L=12.88km	L= 7.18km
	신 설	L= 1.40km	L= 7.10km
주 요 구조물	토 공	사토 10만㎥	순성토 2만㎥
	교 량	6개소 / 145m	6개소 / 180m
	터 널	-	-
	교차로	21개소	22개소
추정사업비		1,199.0억원	1,353.6억원
장 · 단점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협소한 1.4km구간의 S커브선형개선 ○ 기존도로 활용으로 정지시거 확폭구간 다소 증가(3개소/8.9km) ○ 근흥면소재지 기존 2차로 외 신설 4차로 계획으로 교통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개선으로 기존도로 활용률 저조(기존도로 활용률 50%) ○ 정지시거 확폭구간 최소 (1개소/3.9km) ○ 근흥면소재지 기존 2차로 활용 + 좌측 농경지를 활용한 신설 노선계획
선 정		◎	
검토결과		○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장물 저촉 및 생태계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1을 최적 계획노선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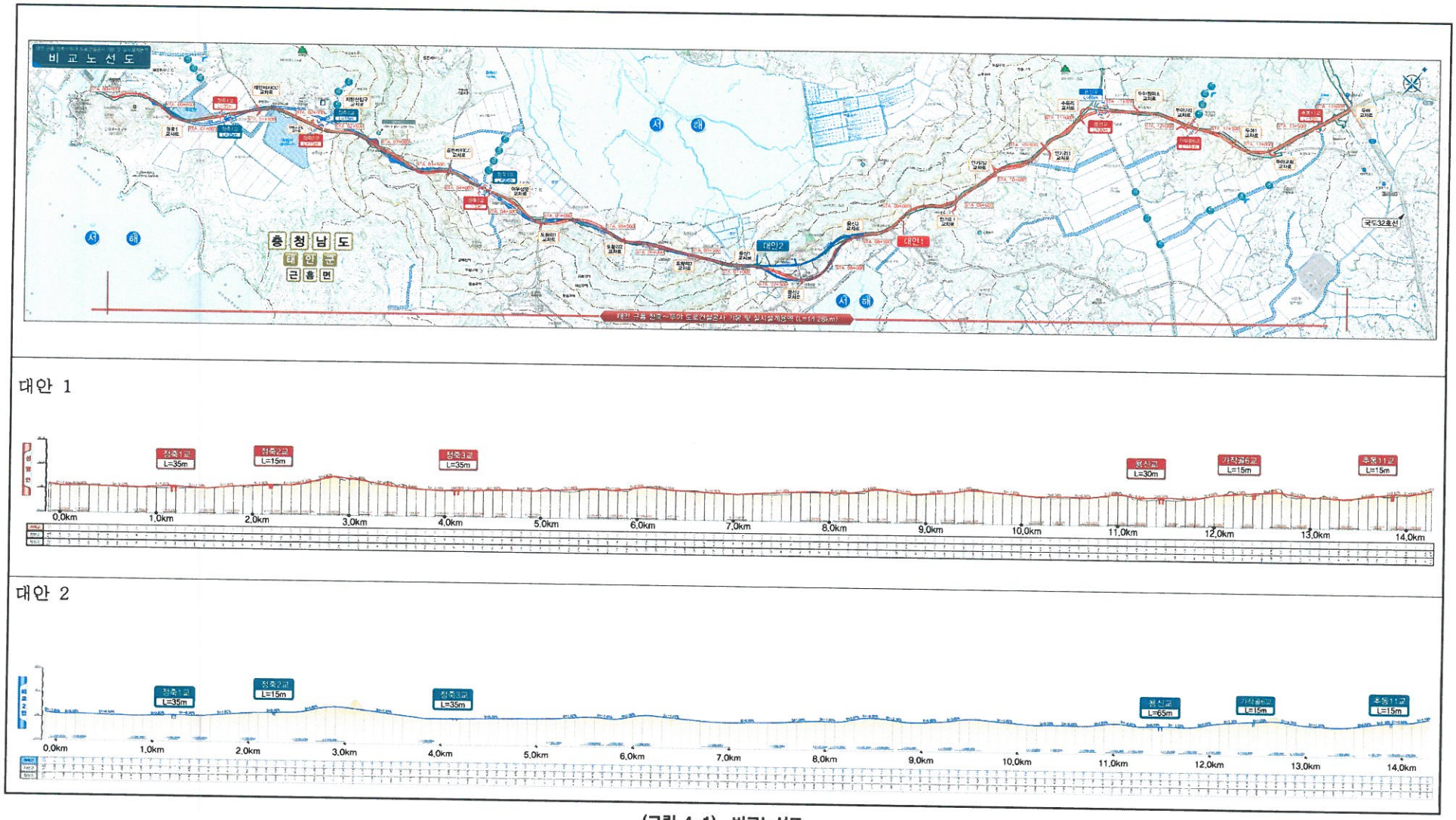
비 교 노 선 도
충 청 남 도
태 안 군
근 흥 면
대안2
대안1
국도32호선
대안 1
정죽1교 L=35m
정죽2교 L=15m
정죽3교 L=35m
원신교 L=30m
가작교6교 L=15m
추동11교 L=15m
0.0km
1.0km
2.0km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9.0km
10.0km
11.0km
12.0km
13.0km
14.0km
대안 2
정죽1교 L=35m
정죽2교 L=15m
정죽3교 L=35m
원신교 L=65m
가작교6교 L=15m
추동11교 L=15m

(그림 4-1) 비교노선도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전략환경영향평가

5.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5.1-1> 평가 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구 분			선정결과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중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중점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예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 변화 예상 ○각종 보호종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중점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중점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중점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영향예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중점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현황 조사 ○대기질 변화,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및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
			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가능여부 검토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온실가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중점	○토지이용 변화 예상

5.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5.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이내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황,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 및 지하수질 현황, 오염원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4지점 × 2회 - 지하수질 : 3지점 × 2회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현황 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수질변화 검토

<표 5.1-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방법

구 분			조사 계획	예측 및 평가 방법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6지점 × 2회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영향 검토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지점 × 2회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인근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6지점 × 2회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영향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② 조사범위 : 태안군 및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 계획 검토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등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5.2 환경영향평가

5.2.1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22-240호), 2023. 1. 1,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 · 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기상, 자연환경자산, 인구·주거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위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주거, 산업 등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사유는 다음 표와 같음

<표 5.2-1>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선정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생태환경	동 · 식물상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물상 및 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됨
	자연환경자산	-	○	-	○자료조사를 통한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
대기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연료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계획노선 차량통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됨
	악취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악취유발시설이 위치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온실가스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 증가 및 에너지이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표 5.2-1 계속>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 결과			사 유
		중점	일반	제외	
수 환경	수질 (수리 · 수문)	○	–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이 예상됨
	해양환경	–	○	–	○대부분 기존도로 확장계획으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상관성이 적으나,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영향 여부 검토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토양	○	–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지형 · 지질	○	–	–	○절 · 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 가동, 차량 운행 등에 의한 소음 영향 및 운영시 교통 소음 영향이 예상됨
	위락	–	–	○	○도로 계획으로 위락 변화 영향 및 상관성이 적어 제외함
	경관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를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기 위함
	위생· 공중보건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함
	전파장해	–	–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에 전파장해 유발요인 없음
	일조장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사회 · 경제 환경	인구	–	○	–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 · 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함
	주거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함
	산업	–	–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으나 정량적 평가가 어려움

5.2.2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사업의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5.2-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영향예측 방법
동 · 식물상	① 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및 육수동·식물상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기준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사업노선(경계) 500m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 · 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파악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기 상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과 인접한 기상대 ③ 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향 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약 500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 조사지점 : 6지점 × 2회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업노선 인근 통행차량에 의한 영향 예측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운영시 : CALINE-3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공사시 장비투입 현황, 운영시 도로 교통량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수질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질 : 4지점 × 2회 - 지하수질 : 3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원단위법 이용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예측
해양환경	① 조사내용 : 주변 어업권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해양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노선 인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표 5.2-2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서 참조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지점 × 2회	○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 · 지질 현황, 특이지형·지질 분포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안정성 등 -문헌자료 및 본 계획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원단위법 이용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 시설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부터 500m 기준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6지점 × 2회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 진동 영향 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 운영시 계획지구 인근 및 내부 도로 등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교통소음예측식 이용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인구	① 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및 영향 검토 -문헌자료 및 본 사업관련 개발계획서 참조

5.3 환경현황 조사계획

5.3.1 환경질 및 동 · 식물상 조사

가. 조사목적

○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질 조사는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의견수렴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단계 조사계획에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임

나. 조사계획

1)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지점 및 동·식물상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노선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시설 등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임

2) 조사방법

○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된 조사 및 분석 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계획임

3)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5.3-1> 전략환경영향평가시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항목 및 조사범위(동·식물상)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범위	조사횟수	
			전략	환평
육상 동·식물상	○식물상, 식생, 육상동물 등 ○종분포, 종다양도, 특정동·식물 등	계획노선 경계 500m이내	2회	2회
육수 동·식물상	○수생식물, 수생동물 등 ○종분포, 종다양도, 특정동·식물 등	계획노선 경계 500m이내	2회	2회

<표 5.3-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환경질)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항목수
			전략	환평	
대 기 질	○PM-10, PM-2.5, SO_2, NO_2, CO, O_3, Pb, 벤젠 (1일 측정)	6지점	2회	2회	8
지표수질	○pH, BOD, COD, DO, SS,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대장균군수,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총유기탄소	4지점	2회	2회	21
지하수질	○일반세균, 대장균군수, 분원성대장균군, 납, 불소, 비소, 수은, 시안, 6가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페놀,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경도, $KMnO_4$소비량, 구리, 색소, pH,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3지점	2회	2회	32
토 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3지점	2회	2회	17
소음·진동	○소음도, 진동도	6지점	2회	2회	2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6.1.1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6.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공람기간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본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 또는 계획수립기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관련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초안 공람시 평가서와 요약서를 함께 비치하고, 주민설명회 시 현수막(플랜카드)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6.2 환경영향평가

6.2.1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에는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는 생략할 예정임

6.2.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본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고 할 것임

○ 해당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시 · 군 · 구와 협의하여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추후 협의)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 평가서(초안)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①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6.2 환경영향평가

6.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생략

○ 본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향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본 평가준비서 단계에서 동시에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제2항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6.2.2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생략

○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의 1~4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며, 생략불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1항에 따라 적법절차를 진행 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5항	절 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4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요청서류 작성 사업자(증명서류 포함) ⇩ 절차생략에 관한 협의 요청 사업자→승인기관 장→협의기관 장 ⇩ 요청내용 검토 협의기관 장 ⇩ 협의결과 통보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기관 장→승인기관 장→사업자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태안 근흥 정죽-두야 도로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시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 (종점)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사업자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